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신용정보 제3자 유상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화 등〉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94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관련 사전 동의	3
2. 개인신용정보 제3자 유상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화	7
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 추가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30.
3. 회 부 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보험설계사에 제공하였으나,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받았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권리와 편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향후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에 관한 입법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
요가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
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
고자 함(안 제22조의9 및 제32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관련 사전 동의

□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③ (생략) <u><신설></u>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공에 따른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상 제공의 기준 및 고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 ⑪ (생략)	⑤ ~ ⑫ (현행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 현행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¹⁾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²⁾도 포함됨.

-
- 1)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함(법 제15조제1항).
-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제7호),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증권, 대부업자 등 금융회사가 주로 이에 해당함.

[표 1]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분류

신용정보회사등 (제15조)	신용정보회사 (제2조제4·5호)	개인신용평가회사 (제2조제8호)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제5조) 포함)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제2조제8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 (제2조제8호의3)
		신용조사회사 (제2조제9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제2조제9호의2)	
	채권추심회사 (제2조제10·10호의2)	
	신용정보집중기관 (제2조제6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2조제7호)	

□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신용정보주체³⁾에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런데, 현행법 제32조제1항⁴⁾ 및 제50조제2항⁵⁾은 이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제3자 정보 제공 시에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3)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함(법 제2조제3호)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 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 동 조항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그 밖의 신용정보회사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한 사정⁶⁾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⁷⁾⁸⁾

[표 2]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적용법률

행위주체	적용법률	의무규정	벌칙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밖의 신용정보회사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중 신용정보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

6)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수사, 재판,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의 위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8)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회사등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⁹⁾

□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미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의무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 제32조제1항과 그 규율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체계정합성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3] 현행법 제32조제1항과 개정안의 비교

조항	의무주체	의무규정	예외	벌칙
현행법 제32조 제1항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는 자 등을 미리 고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는 제외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제32조 제4항	모든 신용정보 회사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없음	없음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인신용정보 제3자 유상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화

□ 개정안은 ①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사전 고지해야 할 사항에 ‘유상제공에 따른 대가의 내용’을 추가하고, ② 그 유상 제공의 기준 및 고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③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는 사항에 ‘제공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공에 따른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상 제공의 기준 및 고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 ----- ----- -----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 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 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u>그 밖에</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 ----- ----- <u>제공의 대가, 그 밖에</u> -----

□ 현행법 제34조의2제1항¹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지사항¹¹⁾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현재 이 고지사항에는 ‘유상제공에 따른 대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런데, 최근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제공하면서 그 유상제공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성이 없어 논란이 되었음.

□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을 미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 여부는 정보 제공 동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에 따른 ‘유상’ 제공의 범위 및 ‘대가’ 산출 기준이 불명확하고¹²⁾, 건별로 ‘대가’를 산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가’의 내용 등은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이 있으므로¹³⁾, 개정안에 따라 유상 제공의 기준 및 고지 내용, 적용제외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때 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등을 위한 실비 보전 등도 ‘유상’으로 볼 것인가

13) 한국인터넷기업협회, sc제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나이스평가정보 등 의견

□ 다만, 동일 취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황운하의원안, 의안 번호 제2202395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 현행법 제34조의2제1항¹⁴⁾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지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개인정보 유상제공 시에 그 대가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 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것으로 보임.

[표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중 일부

현행	개정안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5. (현행과 같음) ¹⁵⁾ 6.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고지사항

현행	개정안
	<u>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u>

- 따라서 동일 취지의 내용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만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개정하기 보다는 정보활용 동의 시 고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 추가

- 개정안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u> 2. (현행과 같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① 신용정보주체(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대출, 카드, 보험, 금융투자상품, 증권계좌, 연금상품, 보험대출, 전자지급수단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③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¹⁶⁾ 이 본인신용정보관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의2호, 시행령 제2조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리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본인신용정보관리 회사라 함.

-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 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면 그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들은 그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전송 하여야 함.¹⁷⁾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현행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겸영할 수 있고,¹⁸⁾ 개인신용정보 주체에 대한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홍보, 데이터 판매 등의 부수 업무를 할 수 있음.¹⁹⁾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영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자금융업, 금융상품자문업, 신용정보업 등)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부수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홍보 및 컨설팅,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교육·연구·조사용역,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업무용부동산 임대차, 기업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등)

- 이와 같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2조의 9제1항²⁰⁾은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²¹⁾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것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²²⁾
- 개정안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 정보주체에게 그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다른 금지행위 위반과 같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임.

[표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

구 분	금 지 행 위	벌 칙
현행법	① 개인신용정보의 <u>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u> ②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안	(추가) 개인신용정보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u>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u>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 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함(법 제33조의2).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에 ‘데이터 판매’²³⁾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정보주체에게 제공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 행위 관련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 그러나,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미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등 모두는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2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부수업무) ④ 영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4.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5.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표 6] 의무규정 및 벌칙 비교

구 분	금지규정	벌 칙
신용 정보법 개정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 <u>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u> ’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2조의9 제1항제1의2호)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u>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 부과함(법 제52조제3항제4의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u> (제59조제1호)’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9조제1호)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u> (법 제72조제2호) ※ 양벌규정 적용 가능 ²⁴⁾

□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란 동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²⁵⁾ 및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24)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처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파견직, 수탁자 등)를 말하며²⁶⁾,

- ‘처리’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보유, 가공, 편집 등 뿐만 아니라 ‘제공’ 행위까지 포함하고²⁷⁾,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²⁸⁾ 구체적으로, ‘거짓’에는 사기 또는 기망과 같은 의미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되고,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공갈·협박 및 착오·오인 유발행위가 포함되며, 언어·문서에 의한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이를 불문함.²⁹⁾
- 즉,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②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되며, ③ 개정안의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 포괄할 수 있음.

26)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27)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2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29)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p.534

-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에 대한 금지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경우에는 법률 간 벌칙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특별법³⁰⁾인 개정안이 우선 적용될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자 했던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7] 동의 강요 및 부당 유도 행위에 대한 벌칙 비교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른 벌칙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의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에 상당 부분 포섭되고,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 제재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권익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113
